

# 2025년 인권경영 성과 보고서

2025. 12



## 목 차

I. 창원레포츠파크 인권경영 현장 .....	1
II. 인권경영 추진정책 .....	2
III. 인권경영 실행과제별 추진실적 .....	6
1. 인권경영체계 공고화 .....	7
2. 인권경영실행 내재화 .....	10
3. 인권문화 확산 및 공유 .....	18
4. 인권침해구제 및 보호 .....	23
IV.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	25

## 창원레포츠파크 인권경영헌장

창원레포츠파크(이하“공단”)는 레포츠(레저+스포츠)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지방재정확충, 지방체육진흥, 환경과 인간중심 도시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실시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직종, 학력, 연령, 종교, 지역, 장애,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해 노사간 상호신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① 추진배경

- (정부정책의 이행)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과 인권”항목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 8.)
- (사회적 책임 이행) 직장내 괴롭힘 등 직원·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조
- (기관장) 인권경영 의지 천명

### ② 추진목적

- 인권친화적 조직 문화 정착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 활동 등 지속적 인권경영 이행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 고도화 필요
- 공단 이해관계자 및 직원 인권보호 증진 강화
- 공단의 ESG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완수

### ③ 인권경영 추진 경과

추진사항	일자	주요내용
1. 인권경영추진계획 수립	'24.12.26	•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2. 인권경영선포식 개최	'24.12.29	• 최고경영진과 근로자 대표 인권경영헌장 선언 및 대내외 공표
3. 인권경영 교육 계획	'25.01~12	• 지방공기업연수원 이러닝센터, 국가인권위원회 (9시간 이상 이수) - 집체: 직장내괴롭힘(2.18) 사회적,장애인식개선(9.24), 4대폭력예방(2회)
4. 인권경영협의체 개최	'25.04~09	• 시 산하기관 인권경영담당자(3명)/인권영향평가지표개발 등
5. 고충상담전문 교육	'25.05.02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여성1명)
6.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5.06.18	• 인권경영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지침개정, 침해 구제 매뉴얼 제정)
7. 인권경영헌장 및 지침 개정	'25.06.18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개정
8.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 제정	'25.06.18	• 피해자 보호 및 규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9. 부패·청탁 등 모의신고 훈련	'25.07.23~	• 위반사항 발생신고 훈련 및 신고서 작성
10. 영화로 배우는 인권교육	'25.09.8	• 제13회 창원여성인권영화제 관람 및 감독과 토크

추진사항	일자	주요내용
11. 인권보호를 위한 설문조사	'25.09~10	• 스트레스조사(사무직), 감정노동자자가진단(현장직), 갑질위험도(전직원)
12. 아동권리증진전시, 캠페인	'25.10.22~11.5	• 아동권리증진 그림전시회(10.22~11.5) 및 캠페인(10.31)
13. 인권다짐 실천 이벤트	'25.10.24~10.30	• 인권존중을 위한 나의 인권다짐N행시
14. 사례로 배우는 인권교육	'25.10.29	• 노무사와 함께하는 갑질사례와 신고절차(노무사 특강)
15. 윤리현장 선포식	'25.10.30	• 기관장 주도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 대내외 선포
16.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25.10.31	•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의 실제적 잠재적 리스크 파악
17. 인권영향평가 지표 회의	'25.11.05	• 부서별 인권담당자/전문가 /인권영향평가 지표 보완 및 실무교육
18. 인권영향평가 실적 제출	'25.11.06~11.16	• 지표별 부서 인권경영추진실적 제출
19. 인권영향평가 실시(매년)	'25.12.	• 내용 : 인권 체크 리스트 항목 평가 • 방법 : 1차 내부평가, 2차 인권경영위원 평가
20.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5.12.18	• 2025년 2회 인권경영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인권영향평가, 성과보고서)
21. 인권침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연중	• 오프라인-온라인(홈페이지JOY1 신문고 채널)운영
22. 인권경영보고 대내외 확산 공유	'25.12	• 인권경영 의지 대내외 표명

#### 4 인권경영 추진 전략

인권비전	<b>인권존중 실현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레포트 전문 공기업</b>
관리목표	<b>지속 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추진 강화</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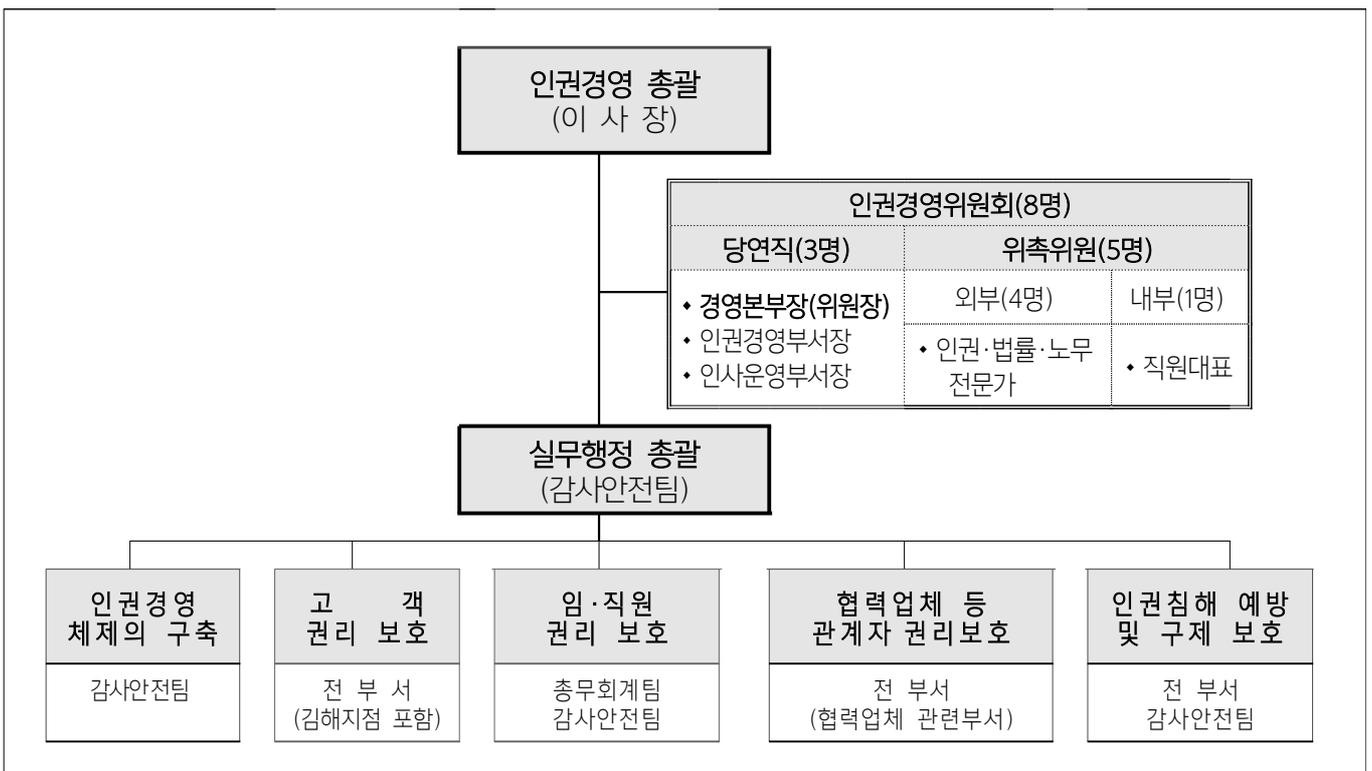
추진전략	인권경영 체계 공고화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인권침해구제 및 보호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시행내규개정</li> <li>• 인권전담부서운영</li> <li>• 인권경영위원회운영</li> <li>• 인권경영 전사적인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 객관적 지표 개발</li> <li>• 주요개선과제 도출</li> <li>• 리스크 개선과제실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 대내외 공개</li> <li>• 인권경영 실행</li> <li>• 사회적약자인권강화</li> <li>• 갑질근절방안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 절차 매뉴얼 수립</li> <li>• 구제절차교육, 홍보, 개선</li> <li>• 피해자 보호 지원</li> <li>• 협력업체 소통강화</li> </ul>
실행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경영선언문 전파</li> <li>② 인권경영지침 개정</li> <li>③ 인권경영위원회 개최</li> <li>④ 인권경영협의체 참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영향평가 실시</li> <li>② 인권개선 중대성 평가</li> <li>③ 인권현황 모니터링</li> <li>- 인권의식, 갑질, 괴롭힘 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경영 대내외 공유</li> <li>② 상호존중의날 운영</li> <li>③ 인권문화 확산 캠페인</li> <li>④ 인권경영 교육 이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권침해신고센터 지속 운영</li> <li>② 직원 고충처리제도 운영</li> <li>③ 인권구제위원회 개최</li> <li>④ 이해관계자 소통간담회</li> </ol>

## ○ 인권경영 성과 지표

구 분	실적 및 연도별 목표				
	2025년			2026년	
인권 경영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침해관련 모니터링 (설문 등) 실시 : 완료</li> <li>•윤리 및 인권교육 이수 : 완료</li> <li>•인권경영성과 대내외 공유 :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관련 모니터링 강화</li> <li>• 분야별 인권증진 사업 추진</li> <li>• 인권침해구제절차 재정립</li> </ul>	
인권 영향 평가 성과	구분	목 표	성 과	구 분	목 표
	기관운영	97.70이상 (1등급)	97.98(1등급) <b>달성</b>	기관운영	98.0 이상
갑질발생 위험도	주요사업	95이상 (1등급)	95.45(1등급) <b>달성</b>	주요사업	95 이상
	갑질발생 위험도	10점 이하	개인별 2.39점 <b>달성</b> 조직문화9.06점 <b>달성</b>	갑질발생 위험도	개인, 직장문화10점이하

## ⑤ 인권경영 체계

### ○ 인권경영 조직도



## ○ 조직체계 업무

조직체계	주요업무	주요활동
이사장	• 인권경영 원칙 준수	• 인권경영 선언 및 의지 표명
경영본부장	• 인권경영 업무 운영 총괄	• 인권경영 전반사항 점검, 관리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실무행정 총괄 주관 (감사안전팀)	• 인권경영 업무 추진 및 수행	•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시행 • 행동강령 제정, 인권교육 주관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팀 부서장	• 부서 인권경영 업무 수행	• 부서별 인권경영 준수 관련 • 개선사항 조치 계획 수립
인권담당자 (각 팀 선임)	•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수행	• 인권경영 세부과제 실행 • 부서별 인권영향평가 업무 수행

## ○ 인권경영위원회

구분	내용
목적 / 기능	•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 의결 역할
구성	• 9인 이내으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인권분야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운영	• 소 집 : 위원장이 필요시, 제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임 기 : 외부위원(2년,연임) 내부위원 (직원 직위 재임기간)
업무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사항 • 인권개선 권고 사항 • 인권침해 접수 사건 구제조치, 재발방지 사항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성명	소속	비고
인권 경영 위원	내부위원 (4)	이O봉	경영본부장	위원장
		김O령	감사안전팀	당연직
		문O식	총무회계팀	당연직
		허O영	경주운영팀	직원대표
	외부위원 (4)	승O경	가족지원센터	인권전문가
		김O영	성폭력상담소	인권전문가
		김O균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O하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추진 전략	실행 과제	추진 내용
<b>추진전략 1</b> 인권경영체계 공고화	① ESG연계 인권경영 내재화	1-1 2024년 인권경영목표 설정 1-2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② 인권경영현장-지킴 정비	2-1 인권경영 현장 및 지킴 개정
	③ 인권경영위원회(협의체)운영	3-1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인권경영 협의체 참여
<b>추진전략 2</b> 인권경영실행 내재화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	1-1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환류
	② 인권현황 모니터링	2-1 갑질 발생위험도 조사 2-2 갑질 예방교육 효과성 조사
	③ 인권교육	3-1 인권지킴이 운영 및 교육 3-2 인권존중 및 문화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b>추진전략 3</b> 인권문화확산 및 공유	① 인권경영 대내외 확산	1-1 인권경영 보고 대내외 확산 공유
	② 상호존중 인권문화 내재화	2-1 인권경영 내부 소통 게시판 운영 2-2 「상호 존중의 날」 운영 2-3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 캠페인
	③ 사회공헌활동	3-1 사회적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④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4-1 근로자 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
<b>추진전략 4</b> 인권침해구제 및 보호	① 구제절차 이행	1-1 인권침해신고센터 지속운영 1-2 통합신고센터 운영 1-3 인권구제위원회 개최
	② 공정사회 구현 노력	2-1 공정거래 환경조성 2-2 모범거래모델 지속 운영 2-3 성과공유제 지속 추진
	③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3-1 이해관계자 소통 위한 협의체 운영 3-2 용역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① ESG 연계 인권경영 내재화

기관 비전	시민의 건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레포트 운영 전문기관			
ESG 비전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환경 상생의 동반자			
슬로건	혁신으로 ⑤ 이제는 ⑤ 세상을 ⑥ 가치있게!			
ESG부문	혁신 (Innovation)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전략목표	가치를 혁신하는 공단	녹색 지구를 지키는 공단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단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단
기능별 전략과제	I-1. 혁신 문화 내재화 I-2. 레포트 여기문화 혁신	E-1. 탄소중립 활동 E-2. 온실가스 감축 E-3. 자전거 문화 확산	S-1. 지역사회 상생협력 S-2. 무결점 안전관리체계 S-3. <b>인권경영 고도화</b> S-4. 일자리 창출	G-1. ESG 책임경영 강화 G-2. 투명 윤리경영 실천 G-3. 소통 및 공시 강화
실행과제	신규 레포트사업 발굴 등 2개	친환경 캠페인 등 6개	맞춤형 사회공헌 등 8개	ESG 경영체계 등 6개
추진조직	혁신주니어보드 등	에너지지킴이 등	산업안전보건위 등	이사회 등
K P I	혁신 안전 발굴 등	온실가스 감축률 등	청년채용고용률 등	이사회 참석률 등

① 2025년 인권경영목표 설정

【 2025년 인권경영목표 】

지속 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추진 강화

- (목적) 기업운영 인권경영 관련 시책개발을 통한 비재무적 역량 강화
- 전임직원 대상 전사적 인권경영 과제 개발 및 시행
- 인권보호, 인권존중 등 대내외 인권존중 실천 시책 개발
- 인권경영 직원참여도, 인권리스크 개선 및 민간영역으로 확산

## 2 인권경영 지침(규정) 개정 (2025. 6. 26)

### 1 인권경영 지침(규정) 개정 개선

인권경영지침 주요 내용														
목적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인권체계구축 및 실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20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경영지침(2018.10.28.제정)</li> <li>○ 제8조(직장내괴롭힘 금지) <b>삭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8조(직장내괴롭힘 금지)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의 다소 소극적 개념만을 의미할 수 있어 <b>포괄적 의미의(직원의 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삭제함.</b></li> <li>- 제8조 삭제로 인한 <b>현행 제10조3(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을 제8조로 이동</b> 변경함</li> </ul> </li> <li>○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b>제③항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의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정조치 준수 강화</li> </ul> </li> <li>○ 제10조(고객 인권 보호) 일부개정, <b>제①~②항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보호를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고객정보 존중 및 보안 조치 마련 명기</li> </ul> </li> <li>○ 제10조3(직원 인권 보호)을 <b>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10조3(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을 제8조로 이동 변경</li> <li>- 제10조3(직원 인권보호) 신설로 <b>협력 회사를 포함한 직원 인권보호 의무 준수 명기</b></li> </ul> </li> <li>○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일부개정, <b>제④항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항 신고인의 불이익과 2차 피해방지 명시</li> <li>- 제4항 불이익과 2차 피해자의 외부구제기관 보호조치시 요청과 <b>인권전담부서장 협조 신설</b></li> </ul> </li> <li>○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항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주관부서자료 요구 권한 명시</li> <li>- 제4항 <b>인권경영위원회 역할 강화</b>, 위원회 심의결정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이사장에게 권고</li> </ul> </li> </ul>												
구성	·7장 29조													
개정사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및 최근 인권환경 변화 반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경영보고 및 평가지침」에 따른 적극적 인권보호 조치 강화													
주요 내용	<b>[향원레포츠파크 인권경영 지침]</b> 신-구조문대비표		<b>현</b>	<b>개정안</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현</th> <th style="width: 50%;">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8조(직장내괴롭힘 금지)</b>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아니된다.                       &lt;조항 변경&gt;  <b>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b>                      ①~②(생략)                      ③ &lt;신설&gt;   <b>제10조(고객 인권 보호)</b>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①~② &lt;신설&gt;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b>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b>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b>제10조(고객 인권 보호)</b>                      &lt;삭제&gt;                       ①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공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공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단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10조3(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lt;신설&gt;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10조3(직원 인권 보호)</b>                      공단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인권보호 의무를 다한다.                 </td> </tr> </tbody> </table>	현	행	<b>제8조(직장내괴롭힘 금지)</b>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아니된다.  <조항 변경> <b>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b> ①~②(생략) ③ <신설>  <b>제10조(고객 인권 보호)</b>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①~② <신설>	<b>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b>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b>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b>제10조(고객 인권 보호)</b> <삭제>  ①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공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공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단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제10조3(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신설>	<b>제10조3(직원 인권 보호)</b> 공단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인권보호 의무를 다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현</th> <th style="width: 50%;">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b>                      ①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t;일부개정&gt;                      ②~③ (생략)                      ④ &lt;신설&gt;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b>                      ①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구제기관에 보호조치 및 구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 전담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28조(인권영향평가실시)</b>                      ① (생략)                      ② 공단은 인권영향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lt;일부개정&gt;                      ③ (생략)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lt;일부개정&gt;                      ⑤ (생략)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제28조(인권영향평가실시)</b>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관련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td> </tr> </tbody> </table>	현	행	<b>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b> ①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③ (생략) ④ <신설>	<b>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b> ①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구제기관에 보호조치 및 구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 전담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제28조(인권영향평가실시)</b> ① (생략) ② 공단은 인권영향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일부개정> ③ (생략)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일부개정> ⑤ (생략)	<b>제28조(인권영향평가실시)</b>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관련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b>제8조(직장내괴롭힘 금지)</b>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아니된다.  <조항 변경> <b>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b> ①~②(생략) ③ <신설>  <b>제10조(고객 인권 보호)</b>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①~② <신설>	<b>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b>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b>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b>제10조(고객 인권 보호)</b> <삭제>  ①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공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공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단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제10조3(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 공단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신설>	<b>제10조3(직원 인권 보호)</b> 공단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인권보호 의무를 다한다.													
현	행													
<b>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b> ①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②~③ (생략) ④ <신설>	<b>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b> ①전담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및 2차 피해를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구제기관에 보호조치 및 구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 전담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제28조(인권영향평가실시)</b> ① (생략) ② 공단은 인권영향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일부개정> ③ (생략)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일부개정> ⑤ (생략)	<b>제28조(인권영향평가실시)</b>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관련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 ③ 인권경영위원회(협의체) 운영

#### 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실행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 임기만료, 관대화현상 사전 예방, 객관성, 공정성확보를 위해 구성원 개편(2023.9.1)
  - 인권위원회 구성(8인) : 현행(내부5인, 외부3인) → 개편(내부4인, 외부4인)

직 위	성 명	소 속(직함)	위원분류	비 고
위원장	이○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본부장)	위원장	
내부 위원	김○령	창원레포츠파크 (감사안전팀장)	인권경영담당팀장	
	문○식	창원레포츠파크 (총무회계팀장)	노무담당팀장	
	허○영	창원레포츠파크 (경주운영팀)	직원 대표	
외부 위원	황○하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위촉직
	승○경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인권대표 기관장	
	김○영	경남여성회 성폭력상담소장	여성대표	
	김○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 역할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인권영향평가지행,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경영 주요사안 심의·의결

####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개최목적 : 지침개정 등 중요정책 실행 및 계기 발생시
- 개최건수 : 총 2회

구 분	일 자	심 의 안 건
1회	2025. 6. 18	인권경영규정(지침)개정 및 인권침해구제매뉴얼 제정 2025년 인권경영추진 계획 보고
2회	2025. 12. 18	인권영향평가 결과(안) 심의 및 의결 2025년 인권경영성과 보고

#### ② 인권경영협의체 참석

- 구 성 : 창원시 산하기관 **레포츠파크-시설공단-문화재단** 인권위원
- 개최건수 : 총 2회

구 분	일 자	심 의 안 건
1회	2025. 4. 24	인권존중 캠페인 공동 추진 및 홍보캠페인 등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참여)
2회	2025. 9. 25	인권영향평가지표 공유 및 개선 회의 등

1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전년도(2024)주요인권이슈 개선사항 이행사항 완료 : 6개 개선

분 야		항 목	이행사항	이행완료
<b>기관운영</b>				
1	고용상의 비차별	③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공단의 주5일 무기계약직(주2일, 주3일, 주5일 근로)의 최저임금, 성과급 지급 여부 등 일반직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임금 부문 등 검토 권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위해 공무원 명절휴가비, 성과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등에 반영, 공무원 근무일수 비례보상 등 임단협 협상으로 <b>매년 지속적 임금의 형평성과 처우 실현</b>	완료
2	산업안전 보장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업무와 상충되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도 공단 인력 여건상 수행중이나, 신규사업 운영, 산재발생 요인 증가 등으로 전문인력의 과다한 업무 수행 해소를 위해 안전보건 업무인력 보완 권고	재난안전보건분야 인력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건의로 감사안전팀 <b>산업안전관리자 1명 총원</b> (2025.7.1.)	완료
3	환경권보장	①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월례회 회의 자료 및 부서별 회의자료를 위한 종이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음. 따라서 <b>전자문서회의</b> 를 위한 <b>팀별 페이퍼 감소</b> 시키는 근로 환경 조성으로 기관의 ESG 강화 개선	<b>디지털안전관리시스템(무사퇴근)</b> 도입으로 각종 자료 집계, 회의자료, 공지사항, 설문조사, 친환경현수막, 개인알림톡 등 <b>모바일 활용</b> 으로 ESG근무환경 조성	완료
4	직원인권	①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b>근로기준법 개정(2021.10.14.)</b> 관련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2023.4월, 고용노동부 기준)참조하여 <b>직장내 괴롭힘</b> 규정에 반영 개정 권고	<b>직장내괴롭힘 규정 개정(25.3.28)</b>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조치」 등 추가	완료
<b>사업운영</b>				
5	공정운영	4. 이용고객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b>창원시 만남공원 인공암벽장</b> 』을 창원레포츠파크 홈페이지에서 접근가능한 시스템이 아닌 통합 포털 사이트에 독립적으로 등록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고 아울러 <b>기관 홍보 확대</b> 필요	<b>창원레포츠파크에서 운영중인 암벽장 홍보</b> 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완료 -경상남도 홍보담당관 -창원시 관광과, 창원시보 -KBS라디오 -블로그 체험단, 개인 블로그 홍보 -현수막 개첨(관내 15개소) -야간 개장 홍보(현수막 및 홈페이지 등)	완료
6	근로자근로 환경 및 보호	4. 근로자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누비자 배송원의 근골격계 질환 관련 <b>산재신청건수(신청4건: 불승인1건, 진행3건)증가, 병가</b> 등으로 인해 배송정비의 업무차질 등 애로점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b>객관성, 공정성 확보</b> 를 위해 <b>전문기관용역</b> 에 의한 <b>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b> 실시, <b>작업시 근로환경</b> 개선, <b>예방교육 강화</b> 필요	<b>업무적합성 평가 규정 반영(25.3.28)</b> - 병가로 인한 휴직후 복귀시 업무적합성평가 실시규정 마련으로 근로자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b>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예산 확정(2026년)</b>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3년주기)시 객관성, 공정성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 시행(150만원)	완료

○ 2025년 인권영향평가 종합 평가 : 96.72점(1등급)

2025년 기관운영		97.98점(1등급) 전년비 0.28점 ↑	
연번	평가지표	25년	24년
	총점	97.98	97.7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8.9	98.7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94.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00
4	강제노동의 금지	92.9	100
5	산업안전보장	97.5	98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	100
7	환경권 보장	100	96.7
8	고객 인권보호	95.8	95.8
9	직원 인권보호	100	95.8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25년)**

2025년 사업운영		95.45점(공영자전거96.7점,레포트사업★94.2점)전년비0.65↑	
연번	평가지표	25년	24년
	총점	95.45	94.8
1	공정운영	93.8	94
2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100
3	안전보장	100	96.6
4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보호	83.3	83.2
5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100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25년)**

★레포트사업(암벽장,캠핑장)운영

□ 기관운영 97.98점 (9개분야 30개항목 131개지표)

분 야	항 목	분야 점수	지표 총괄	항목 점수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8.9	30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b>보완</b>	94.4	9	8	1	0	0	0
				②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b>보완</b>	100	5	5	0	0	0	0
				③ 인권경영성과 <b>보완</b>	100	7	7	0	0	0	0
				④ 구제절차 마련	100	6	6	0	0	0	0
				⑤ 인권교육시행	100	3	3	0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96.7	14	① 고용상 비차별	90	5	4	1	0	0	0
				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100	6	6	0	0	0	0
				③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100	3	3	0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	14	①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100	4	4	0	0	0	0
				② 노조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00	5	5	0	0	0	0
				③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히행	100	5	5	0	0	0	0
4	강제노동의 금지	92.9	7	92.9	7	6	1	0	0	0	
5	산업안전보장	97.5	21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100	5	4	1	0	0	0
				② 작업장 안전	100	4	4	0	0	0	0
				③임상부 및 장애인 등 홍보	87.5	4	3	1	0	0	0
				④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	5	5	0	0	0	0
				⑤ 산업재해피해근로자 지원	100	3	3	0	0	0	0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00	9	①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3	3	0	0	0	0
				② 모니터링 실시	100	2	2	0	0	0	0
				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4	2	0	0	0	2
7	환경권 보장	100	13	①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90	5	4	1	0	0	0
				② 환경정보의 공개	100	3	3	0	0	0	0
				③ 비상계획 수립	100	5	5	0	0	0	0
8	고객 인권보호	95.8	13	① 고객보호 위한 법령 준수	87.5	4	3	1	0	0	0
				② 고객 사생활 보호	100	6	6	0	0	0	0
				③ 고객보호 구제절차	100	3	3	0	0	0	0
9	직원 인권보호	100	11	① 직장내 괴롭힘 금지	100	3	3	0	0	0	0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100	3	3	0	0	0	0
				③ 일·가정 양립	100	3	3	0	0	0	0
				④ 감정노동자 보호	100	2	2	0	0	0	0
<b>합 계</b>		<b>97.98</b>	131	<b>97.98</b>	<b>131</b>	<b>123</b>	<b>6</b>	<b>0</b>	<b>0</b>	<b>2</b>	

□ 사업운영 : 95.45점 (2개분야 10개항목 40개지표)

① 공영자전거 사업 96.7점 (5개항목/19개지표)

분 야	항 목	분야 점수	지표 총괄	항목 점수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공영 자전거 사업	96.7	19	① 공정운영	100	3	3	0	0	0	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3	3	0	0	0	0
				③ 안전보장	100	7	7	0	0	0	0
				④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보호	83.3	3	2	1	0	0	0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3	3	0	0	0	0
합 계		96.7	19	96.7	19	18	1	0	0	0	

② 레포트사업 94.2점 (5개항목/21개지표)★ ★레포트사업(암벽장,캠핑장)운영

분 야	항 목	분야 점수	지표 총괄	항목 점수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2	레포트 사업	94.2	21	① 공정운영	87.5	4	3	1	0	0	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3	3	0	0	0	0
				③ 안전보장	100	7	7	0	0	0	0
				④ 근로자 근무환경 및 보호	83.3	3	2	1	0	0	0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4	3	0	0	0	1
합 계		94.2	21	94.2	21	18	2	0	0	1	

□ 주요 인권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7개의 인권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

분 야	항 목	중대성평가 수준(5+5)				비 고	
		영향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수준		
<b>기관운영(5건)</b>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5.인권경영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활동을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지원한다	2	2	4	저위험	
2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3.공단은 임금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	4	7	중위험	주요인권이슈
3	강제노동의 금지	① 강제노동의 금지 →2.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4	6	중위험	주요인권이슈
4	산업안전보장	③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장애인들이 회사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4	2	6	중위험	주요인권이슈
5	고객인권보호	① 고객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2.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제공 등에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2	4	저위험	
<b>사업운영(2건)</b>							
6	공정운영	4.이용고객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시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레포트사업)	2	2	4	저위험	
7	근로자 근로 환경 및 보호	1.근로자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누비자사업)	1	4	5	중위험	주요인권이슈

□ 주요 인권이슈 선정 및 개선 과제 : 4건 (기관운영 3건, 사업운영 1건)

분 야	항 목	중대성평가 수준(5+5)				비 고	
		영향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수준		
<b>기관운영(3건)</b>							
1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3.공단은 임금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	4	7	중위험	주요인권 이슈
2	강제노동의 금지	① 강제노동의 금지 →2.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2	4	6	중위험	주요인권 이슈
3	산업안전보장	③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장애인들이 회사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4	2	6	중위험	주요인권 이슈
<b>사업운영(1건)</b>							
4	근로자 근로 환경 및 보호	1.근로자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누비자사업)	1	4	5	중위험	주요인권 이슈



분 야	항 목	개 선 과 제	주관 부서
<b>기관운영(3건)</b>			
1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3.공단은 임금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총무 회계팀
2	강제노동의 금지	① 강제노동의 금지 →2.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총무 회계팀
3	산업안전보장	③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4. 장애인들이 회사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CS 레포트팀 발매 ICT팀
<b>사업운영(1건)</b>			
4	근로자 근로 환경 및 보호	1.근로자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총무 회계팀

## ○ 종합평가 의견

### 총 평

- ▶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 이행사항을 지표에 반영하였으며, 공공기관 인권 경영 메뉴얼을 기준하여 기관운영 및 사업운영분야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인권경영을 실시하고자 체계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항목들을 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 ▶ 2025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총171개의 지표(예153개, 보완15개, 해당없음3개)에서 기관운영은 평점 97.98점('24년 97.7점, 전년대비0.28점↑), 사업운영은 평점 95.45점(전년대비 0.65점↑)으로 총점 96.72점(1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0.42점 상승하여 1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9개의 인권이슈 중 중대성 평가 결과, 7건의 인권이슈 중 4건의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하여 개선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보장 사업운영근로자 근로환경 및 보호)
- ▶ 매년 평가지표를 공단 운영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 발굴 및 사전예방을 통해 인권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② 인권현황 모니터링

### ① 갑질 발생 위험도 조사

- 조사기간 : 2025. 11.06(목) ~ 11.09(일)
- 응답인원 : 128명/220명 (응답율58.2%)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 조사내용 : 개인별 갑질 진단 및 직장문화 진단
- 조사결과

구 분	평 균	응답자(128명)		
		팀장(4급이상)	사무직(차장이하)	현장직(주임)
개 인 진단	2.39	1.89	4.68	0.6
직장문화 진단	9.06	9.06		

\*(진단척도) 매우높음(30점이상),높은(21~29점),보통(11~20점),낮음(10점이하)

- 설문조사결과 조직내 임직원 대다수는 개인별 갑질위험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갑질발생 위험도는 보통이하”(11점~20점)가 50.7%, “낮다”(10점이하)가 33.3%로 조직문화에서는 갑질 발생 위험성을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별 갑질발생 위험 진단)“최근 상사가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들은 적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자가 11.9%로 나타나 조직내에 갑질위험성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직장문화 갑질발생 위험 진단) “갑질관련 내부신고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문항에 “그렇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5.9%(11명)로 나타나 피해경험시 “불이익 우려”로 인해 침묵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식적인 신고체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② 갑질예방교육의 효과성 조사

- 조사기간 : 2025. 10.29(수)
- 응답인원 : 39명/61명 (응답율64%)
- 조사방법 : 온라인(무기명, 비공개방식)/ 개인별 모바일 문자전송
- 조사내용 : 교육내용평가(8개문항), 교육인식행동변화(3문항)
- 조사결과

교육 내용 평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평가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움”	25	13	0	1	0	39
“갑질과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을 알게 됨”	25	13	0	1	0	39
“제시된 예시가 직장상황과 관련성 높음”	26	12	0	1	0	39
“교육을 통해 갑질과 괴롭힘 예방의 중요성 재 인식”	33	5	0	1	0	39
“교육을 통해 갑질과 괴롭힘 행위 근절 의지가 생김”	29	9	0	1	0	39
“교육시간과 구성이 적절함”	28	10	0	1	0	39
“교육에 적극 참여함”	27	11	0	1	0	39
“갑질과 괴롭힘 대처방법(신고,절차,상담)알게 됨”	29	9	0	1	0	39

교육 인식 행동 변화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갑질과 괴롭힘예방을 위한 기관/조직 노력에 긍정적 임 ”	32	6	0	1	0	39
“교육내용을 동료, 부하직원관계에 적용 가능 함”	32	5	0	2	0	39
“교육 후 상호존중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 된다.”	30	7	1	1	0	39

설문조사 결과 갑질교육내용(8개항목), 교육인식행동변화(3개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39명)의 38명(97.4%)이 긍정적(매우그렇다, 조금 그렇다)인 답변을 하여 교육의 효과성이 높았으며, 갑질예방에 대한 인식행동변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 ③ 인권교육

### ① 인권지킴이 운영 및 교육

#### ○ 부서별 인권지킴이 지정 운영(8팀/9명)

##### • 실행내용

- 부서 및 협력업체 등 차별행위, 인권침해 요소 등 제보 및 모니터링
-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아이디어 발굴
- 부서별 인권리더로서 인권존중 릴레이 챌린지 시행
- 공단 인권친화적 직장 문화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 인권침해 유형별 사례, 인권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파 (부서 관할 이해관계자 포함)

○ 특정대상 맞춤 교육 참여

교육	일자	장소	주요내용
1회 인권경영협의체 (담당)	4.24	창원대학교	인권영향평가결과 공유 및 인권 캠페인 공동 추진
2회 인권경영협의체 (담당)	9.25	창원시설공단	인권교육, 홍보 등 인식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인권지표 담당자 회의	3회	회의실	인권영향평가지표 담당자 회의 및 실무교육
고충 상담원 전문과정	5.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② 인권존중 및 문화확산을 위한 위한 인권교육

○ 인권경영 교육 운영 : 인권경영지침 제13조(인권교육) 연 1회 이상

과정명	일시	방법	대상	주요내용
인권 교육	1분기 ~4분기	온라인 (9시간)	전 직원	- 지방공기업연수원 이러닝센터 접속 - 국가인권위원회: 갑질예방,공정/인권,감정노동자보호 등
직장내괴롭힘 예방	2.18	대회의실	직원대상	- 반괴롭힘 정책 선언문 낭독, 발생시 조치 및 해결방법
인권구제절차 매뉴얼	5.31	사내 게시판	전 직원	-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정에 따른 홍보
인권영화관람토론회	9.3	메가박스	14명	- 제13회 창원여성인권영화제 관람 및 감독과 토크
장애인식개선	9.24	대회의실	직원대상	- 진해장애인복지관 주관(장애 차별 편견 제거)
부정부패·청탁·이해충 돌행위 모의신고 훈련	7.23-8.31	신고	직원20명	- 위반사항 발생신고 훈련 및 신고서 작성
인권 갤러리	10.22~11.5	모바일톡	전 직원	- 국가인권위원회 공모수상작 등 다수 작품
아동인권권리증진 그림전시회 및 캠페인	10.22~11.5	객장2층	직원,고객	- 아동권리 증진 그림전시회(11.22~11.5) - 아동학대 예방 권리증진 캠페인(10.31)
인권윤리 특강	10.29	회의실	40명	- 사례로 배우보는 갑질예방법(노무사 특강)
인권실천 다짐 이벤트	10.24~10.30	모바일	57명	- 인권존중 위한 나의 인권 다짐 N행시(사은품50명 제공)
윤리헌장선포식	10.29	회의실	전직원	-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대내외 선포
인권 특강	11.13 12.05	창원대학교	13명	-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저자와의 북 토크 - 청년의 인권과 사이버 위협 그리고 대학의 책임
4대폭력예방 집체	2회	대회의실	직원대상	- 폭력예방 의식 강화, 인간존중문화 확립
사내 게시판	수시	온오프라인	전직원	- 국가인권위원회, 창원여성의 날, 경남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소식지, 카드뉴스 등(수시)
"상호존중의 날"운영	매월	인권지킴이	전 직원	- 매월 주제별 인권교육 실시

※ 잠재적 인권침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완료

○ 신규직원 윤리&인권 교육 실시

- 기 간 : 연 중 / 감사안전팀
- 교육대상 : 신규직원 및 청년체험형 인턴 23명
- 교육내용 : 윤리&인권 관련(임직원 행동강령, 윤리·인권경영현장 공유, 인권경영지침 안내 등)

**추진전략 3**    **인권문화 확산 및 공유**

**1** 인권경영 대내외 확산

○ 공단 이해관계자 서한문 발송

- 목적 : 공단의 인권존중의 의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민간영역의 동참 유도
- 대상 :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 (지역주민, 고객, 협력업체, 용역업체 등)
- 내용 : 공단 인권경영 및 인권경영현장 공유 전파

○ 인권경영 추진업무 및 성과 대.내외 공개

- 공단 인권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추진업무 및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인권경영성과보고서,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 등)

**2** 상호존중 인권문화 내재화

**1** 인권경영 내부소통 게시판 운영

- 목적 : 공단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소통 및 공유를 위한 사내 게시판을 신설
- 내용 : 인권경영 추진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 (그룹웨어-게시판-인권경영)
  -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시책 공유를 위한 홍보강화
  - 인권경영 현장 및 이행지침 개정 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웹진’, 인권 영화·도서 추천, 인권퀴즈 대회 등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소식, 권고사항 등 공지

홈 > 게시판 > 사내게시판 > **인권경영**

전체	공지사항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인권 캠페인	인권교육
제목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전체 : 109건 ☆				
번호	분류			
108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발매ICT팀 11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 결과 <a href="#">🔗</a>		
107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11월 총무회계팀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a href="#">🔗</a>		
106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11월 경주운영팀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a href="#">🔗</a>		
105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레포트사업팀 10월~11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a href="#">🔗</a>		
104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10월 경주운영팀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a href="#">🔗</a>		
103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10월 총무회계팀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a href="#">🔗</a>		
102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발매ICT팀 10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 결과 <a href="#">🔗</a>		
101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기획홍보팀 상호존중의 날 운영 결과보고(7.8.9월) <a href="#">🔗</a>		
100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레포트사업팀 9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a href="#">🔗</a>		
99	상호존중의 날 운영결과	2024년 9월 경주운영팀 상호존중의 날 운영 결과 <a href="#">🔗</a>		

## ② 상호존중의 날 운영

- 운영일자 : 매월 11일 < (1=1)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 >
- 대 상 : 공단 임직원 및 대외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
- 추진내용 : 매월 캠페인 전개(사내 팝업창), 월별 인권관련 추진과제 시행
  - 대내외 솔선수범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소임 이행
  - 상호이해와 소통으로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 관계로 변화 유도
  -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소통과 공감의 공단문화 조성에 기여
  - 인권캐치프레이즈(개인PC, 잘 보이는 출입문, 사물함 부착 활용 등)
  - 인권명함 배부 (개인 PC, 사물함 부착 활용)



## ③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 ○ 인권영화제 참여 및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5. 9. 3(수)
- 장소 : 메가박스 창원
- 대상 : 사전신청자 14명 ※ 창원시설공단 공동 참여
- 내용 : 창원여성의 전화 인권영화 관람 및 감독과 영화평 토론

인권영화관람 만족도	인식개선 도움 여부	영화관람장소 만족도
<p>1. 매우 만족 83%</p> <p>2. 만족 17%</p>	<p>1. 도움 있음 83%</p> <p>2. 도움 없음 17%</p>	<p>1. 매우 만족 25%</p> <p>2. 만족 25%</p> <p>3. 보통 25%</p> <p>4. 불만족 25%</p>
<p>성고장관념 및 상차별 감소성 높이는 기회 83%</p> <p>1. 매우 높음 83%</p> <p>2. 높음 17%</p>	<p>관람전 기대치(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83%</p> <p>1. 100% 이상 83%</p> <p>2. 80% 이상 17%</p>	<p>관람후 기대치(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83%</p> <p>1. 100% 이상 25%</p> <p>2. 80% 이상 25%</p> <p>3. 60% 이상 25%</p> <p>4. 40% 이상 25%</p>

○ 인권특강 참여

- 일시 : 2025. 11. 19(수)
- 장소 :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NH인문홀
- 대상 : 사전신청자 9명
- 내용 :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저자와의 북토크



- 일시 : 2025. 12. 05(금)
- 장소 :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NH인문홀
- 대상 : 사전신청자 4명
- 내용 : 청년의 인권과 사이버 위험, 그리고 대학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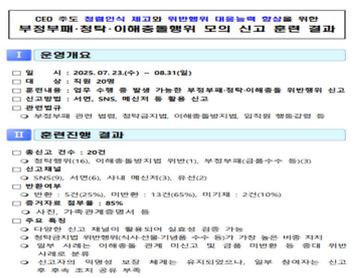


○ 노무사와 함께하는 인권윤리 특강

- 일시 : 2025. 10. 29(수)
- 장소 : 회의실
- 대상 : 전 직원
- 내용 : 갑질의 이해(정의, 사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신고절차, 방법 등



○ 인권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구분	내용																															
<p>인권윤리문화 행사 주간 운영</p>	 <p>다시 도약하는 공단,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b>인권 윤리 문화행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들이인권다짐 이벤트(10.24~10.30)</li> <li>○ 인권헌장 특강(10.29 14시, 오후5시)</li> <li>○ 윤리헌장 선포식(10.29 13시15분, 오후5시)</li> <li>○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10.29 ~ 11.05, 2주간)</li> <li>○ 아동권리주간 캠페인(10.31, 2층 서문)</li> <li>○ 인권 캠페인 온라인전시회(10.31, 인력전시관)</li> <li>○ 상호존중의 날 홍보 (10.22~11.05 2주간)</li> </ul> <p>2025.10.22(수) ~ 11.05(수)</p>																															
<p>윤리헌장 선포식 (기관장 주도)</p>	 <p>창원레포츠파크 윤리경영 헌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헌법 이차헌장 공수국도 부속과 비리를 배격하겠다는 국민윤리의 불변의 원칙을 선언하고 후행하고 운영하게 함을 수행하였음을 선언한다.</li> <li>2. 공인 직무상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당시에 당시에 따라 운영하게 함을 수행하였음을 선언한다.</li> <li>3. 성실 우리의 명예와 존엄을 공중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헌하여 직무 수행에 있어 정직과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다.</li> <li>4. 공인 직무상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당시에 당시에 따라 운영하게 함을 수행하였음을 선언한다.</li> <li>5. 공인 직무상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당시에 당시에 따라 운영하게 함을 수행하였음을 선언한다.</li> <li>6. 공인 직무상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당시에 당시에 따라 운영하게 함을 수행하였음을 선언한다.</li> <li>7. 공인 직무상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당시에 당시에 따라 운영하게 함을 수행하였음을 선언한다.</li> </ol> <p>선포서 작성자 : <b>이수연</b> (기관장)</p>	<p>-일시 : '25.10.29 -헌장선포: 7개항목선포 및 낭독 -서약식 : 임직원 116명 서약 -헌장내용 : 청렴 공정, 성실 품위, 존중 신속 신뢰</p>																														
<p>부정부패·청탁·이해충돌행위 모의 신고 훈련 (기관장 주도)</p>	 <p>CEO 주도 청탁·이해충돌행위 모의 신고 훈련 결과</p> <p>I 운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 시 : 2025.07.23(수) ~ 08.31(월)</li> <li>대 상 : 직위 20명</li> <li>주요내용 :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부정부패·청탁·이해충돌 행위 모의 신고 및 신고처리(서약, 5선, 6선) 등 모의 신고</li> <li>방안명 : 부정부패·청탁·이해충돌행위 모의 신고 훈련</li> <li>주요내용 : 1. 신고 접수, 2. 신고 접수, 3. 신고 접수, 4. 신고 접수, 5. 신고 접수, 6. 신고 접수, 7. 신고 접수, 8. 신고 접수, 9. 신고 접수, 10. 신고 접수</li> </ul> <p>II 훈련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신고 건수 : 20건</li> <li>○ 신고 유형 : 1. 청탁(16건), 2. 부정부패(4건), 3. 이해충돌(0건)</li> <li>○ 신고 처리 : 1. 5선(16), 2. 6선(4), 3. 7선(0)</li> <li>○ 신고 처리율 : 100%</li> </ul>	 <p>감사안전팀 1723(25.9.19)</p> <p>-훈련기간 : '25.7.23~8.31 -훈련대상 : 직원20명 -훈련내용 : 위반사항신고 훈련</p>																														
<p>인권실천다짐 이벤트</p>	 <p>2025년 인권실천다짐 이벤트</p> <p>나의 인권다짐 EVENTS</p> <p>행사기간 : 2025년 10월24일(수)~10월30일(화)   행사장 : 2층 서문   행사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p> <p>행사내용 : 1.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2.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3.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4.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5.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6.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7.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8.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9. 인권실천다짐 이벤트, 10. 인권실천다짐 이벤트</p>	 <p>인권실천다짐 이벤트 참가자 명단</p> <p>2025년 인권실천다짐 EVENT! 행운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김민준 3105</td> <td>김민준 3105</td> <td>김민준 3105</td> </tr> </table>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김민준 3105																														
<p>지역민과 함께하는 아동권리증진 인식 개선 전시회</p>	 <p>아동권리증진 인식 개선 전시회</p>	 <p>아동권리증진 인식 개선 전시회</p> <p>-주제 : 그림 전시전(작품30점) -일시 : '25.10.22~11.2 -장소 : 본관 1층 현관 -대상 : 임직원 및 고객 -제공 : 창원시아동권리보호전문기관</p>																														
<p>아동권리증진 인식개선 캠페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약식</p>	 <p>아동권리증진 인식개선 캠페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약식</p>	 <p>아동권리증진 인식개선 캠페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약식</p> <p>-일시 : 10.30 15시~16시 -장소 : 2층 서문 입구 -내용 : 아동학대 조기 발견 -참여 :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약식(11.9)</p>																														

### ③ 사회공헌활동

#### ①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농촌 일손돕기 및 성금기탁	실 적	자전거 문화 확산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일손돕기</li> <li>- 고향사랑기부 성금기탁 (1,300만원)</li> <li>- 각종 자전거 대회 후원</li> </ul>	2회(40명) 13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문화체험, 무료교실, 재능기부</li> <li>-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li> <li>- 누비자 바로바로 이동정비, 무상수리</li> </ul>	10회 2회 다수
지역민과 함께 하는 나눔 봉사	실 적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김장 담기 참여</li> <li>- 영남권대형산불피해지역기부(2,370만원)</li> <li>- 노사합동 긴급수해복구(산청,합천)</li> <li>- 무료급식소 일손돕기(김해,본장)</li> <li>- 지역이웃돕기 물품·성금기부(복지관)</li> </ul>	1회(10명) 1회 2회(59명) 33회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반찬 차량배달(도우누리봉사단)</li> <li>- 두바퀴 봉사단(복지시설 환경정비)</li> <li>- 김해지점 자전거 무상수리</li> <li>- 장애인 복지시설 일자리 및 물품지원</li> </ul>	24회 3회 5회 2회
환경사랑 및 방역활동	실 적	환경사랑 실천활동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해변 해양환경정화 활동</li> <li>- 생활자전거타기 대행진 지원</li> <li>- 차량2부제 참여</li> <li>- 마스터 안전점검수리단 창단 및 활동</li> </ul>	2회 1회 연중 1회(캠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소절감 홍보부스 운영</li> <li>- 자전거 중고장터 운영</li> <li>- 반려해변 해양환경정화활동</li> </ul>	5회 12회 2회
생명나눔 실천	실 적	지역상생 시설 대관, 인력지원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헌혈 캠페인</li> <li>- 아동 및 장애 인권증진 캠페인</li> </ul>	3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장 대관(행사, 훈련장 제공)</li> <li>- 지역예술인 전시 무상제공</li> </ul>	연중 다수
사회적가치 실현 우선구매확대	실 적	재능기부 활동	실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생발전(협약,물품구입,선결재)</li> <li>-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우선구매</li> <li>- 여성기업제품 구매</li> </ul>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의 리폼 자전거 전달</li> <li>- 방송체험 프로그램</li> <li>- 방문고객 자전거 정비소 수리</li> </ul>	2회(30대) 6회(97명) 연중

### ④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주치의 “산업보건의(사)” 운 영	-일시: 연6회 -장소: 본장 및 누비자센터 -대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내용: 건강상담, 근골격계질환 치료, 기타 상담	<b>산업보건의진료(상담) 서비스 운영</b> > 일 자: 12. 6.(수) > 시 간: 14:00 ~ 16:00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특강	-일시: '25.9.10 -장소: 대회의실 -대상: 직원 -내용: 뇌심혈관질환 예방 -강사 : 창원 터의원 원장		 

<p>심폐소생술 교육</p>	<p>-횟수: 3회(5월, 6월, 9월) -대상: 직원 및 이해관계자 (전직원, 경륜심판, 안전원) -내용: 응급처치교육</p>			
		1회 경륜심판 직원	2회 전 직원	3회 AED 관리 직원 등

## 추진전략 4 인권침해구제 및 보호

### 1 인권침해 구제절차 이행

#### 1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 ○ 공단내 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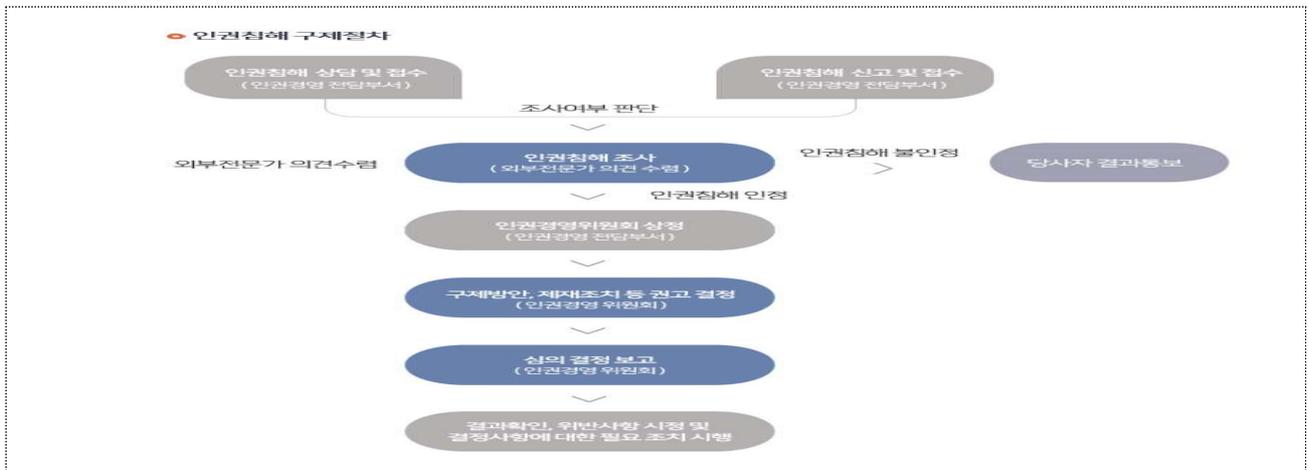
인권침해 고충상담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 제공, 상담을 통한 사전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성희롱 고충상담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직원 고충처리상담	일반 고충처리(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 및 접수
부조리신고센터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항 (부정청탁, 알선행위, 공금횡령·유용 및 부당한 압력행사 등)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및 확인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조사 및 심의	시정 및 조치	환류 및 개선
인권침해, 차별행위 발생 (인권경영전담부서 신고)	인권침해 여부 확인	이사장 및 위원장 보고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및 소집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검토, 현장조사 등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구제결과 피드백 및 개선점 도출

##### ○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대.내외 공유 및 전파



○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제정(2025.6.01.)

- 구제대상 : 공단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업체 등)
- 주요내용 : 인권 구제절차, 상담신청, 조사, 종결, 관련서식 등

② 통합 신고채널 운영

○ 공단 홈페이지내 신고사항을 통합하여 joy1신문고 채널 운영



○ 인권침해 고충상담실 운영

- 주관부서 : 전담부서 (상담원 : 인권담당팀 및 고충상담원)
- 구제대상 : 공단 경영활동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협력업체 등)
- 실행내용 :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한 접수 및 전화,팩스,우편,이메일, 홈페이지 등 신고
- 신고방법 : 인권고충 상담센터, 홈페이지 통합신고(joy1신문고)

② 공정사회 구현 노력

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 사후심사 유지
  - 반부패 방침 관련 프로그램이행, 부패위험성 평가(유효기간:'22.10.2~'25.10.3)
-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계약 담당 교육 시행 (연1회이상)

② 모범거래모델 지속 운영

- (주요목적)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환경조성, 이해관계자 권익보호
- (추진내용) 부당발주체크리스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표준계약서 상호 동등표기

③ 성과공유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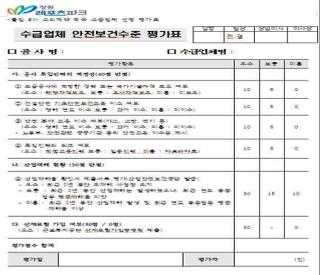
- (추진내용) 상생과 협력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 공유제 계약 체결(2025년 : 3건)
  - 공유형 누비자활성화 홍보마케팅, RFID물품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점검 등 결과 확인

### 3 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 1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p>-일시: 매월 네째주 목요일 (12회) -장소: 고객식당 휴게실 -참여: 11명(수급업체5명,레포트6명) -방법: 대면 토론 회의 -주관: 감사안전팀 담당자 -내용: 안전보건협의,윤리 인권침해, 건의사항</p>	<p><b>11월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결과보고</b></p> <p>올달 내 도급-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관계자(수급업체, 레포트)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상사적이고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함.</p> <p><b>■ 관련근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52조</li> </ul> <p><b>■ 개요</b></p> <p>□ 일시/장소 : 2025. 11. 27. (목) 10:20 ~ 12:00 / 2층 방음관 조경식당 □ 참석자 : 11명 □ 운영형태: 대면 (수급업체 5명, 레포트 6명) / 비대면 (방음관 담당자) □ 운영목적: 사업 부호제외계약(원인수사도,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p> <p><b>■ 안전협의 및 협의 내용</b></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평가(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평가(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td> </tr> </table> <p><b>■ 기타 조항 및 점검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평가(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평가(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평가(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업체 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안전 관리(안전보건법)</li> <li>○ 작업장 안전관리(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평가(안전보건법)</li> <li>○ 안전보건교육 실시(안전보건법)</li> </ul>			

#### 2 용역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p><b>주요목적</b>    도급, 용역, 위탁업체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안전문화 정착</p> <p><b>추진방법</b>    적격 수급업체 선정 지침서 기준 평가</p> <p><b>추진시기</b>    연중 수시(8건, 12.13일 기준)</p> <p><b>평가주체</b>    사업부서 및 감사안전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p>	
-------------------------------------------------------------------------------------------------------------------------------------------------------------------------------------------------------	-------------------------------------------------------------------------------------

## IV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 □ 성과평가

- 인권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인권문화 형성, 인권범위 및 가치의 확산 등 인권경영 도입 이후 관련규정과 지침을 개정하여 실질적 인권경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ESG연계 인권이행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인권경영 정책 실현되고 있음
- 중대성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이슈 도출 등 인권경영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지속적 실시를 통한 인권존중문화 선도하고 있음

### □ 향후 추진사항

- 인권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한 20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 인권존중 문화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존중 강화에 노력
- 인권경영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고객, 시민, 협력업체 등)소통 강화 계획 수립
- 공단의 인권경영성과 대·내외 공개 (인권경영체계,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
  - 창원레포트파크 홈페이지-열린경영-인권경영
  -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경영공시항목-기타경영공시자료-인권경영보고